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4717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천, 구태형

변론 종결2024. 4. 4.

판결 선고2024. 5. 16.

주 문

- 원고에게, 피고 B는 1,497,053,045원, 피고 C는 502,946,9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3.부터 2024. 5. 16.까지는 연 6%, 202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946,168,958원, 피고 C는 653,831,0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19. 1. 9. 부동산 금융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F의 부모이다.

나. E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22. 11. 14. F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C가 보유한 E 발행의 보통주 854,918주, 피고 B가 보유한 위 주식 2,543,013주 합계 3,397,93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E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H(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G, H을 통틀어서 'G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을 6,000,000,000원으로 하여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제2조 [계약의 대상 목적물 및 주식매매 대금]

매수인(G 등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매도인(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상회사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3,397,931주와 대상회사의 경영권(이하 '매매대상')을 금 육십억 원(이하 '주식매매대금')에 매수하기로 한다.

제3조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매수인은 계약금으로 본 계약 체결일에 주식매매대금 금 육십억 원의 일부인 금 이십억 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계약금은 잔금과 함께 매수대금의 일부로서 제4항 기재 일시에 매도인에게 자연 귀속된다.

3. 매수인은 주식매매대금 금 육십억 원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주식매매대금 잔금 사십억 원을 임시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별첨 2] 매도인별 계좌 내역표 상의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 후 질권설정하는 방식으로 예치(에스크로)하여야 한다.
5.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은 [별첨 2] 매도인별 매도주식내역상에 정한 금액에 따라 주주 각각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8조 [경영권 양수도]

1.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주식대금지급일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은 이를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일에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여, 등기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및 정관변경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이하 '본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해제]

1.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개정, 해제 및 취소는 매도인들 및 매수인들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진술, 보장, 확약 또는 기타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당해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지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매도인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에 따른 잔금을 에스크로 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1.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각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별첨 2. 매도인별 매도대상 주식 내역

1	C	2.56%	854,918	502,946,955	1,005,893,910
2	B	7.62%	2,543,013	1,497,053,045	2,994,106,090

1	C	2.56%	854,918	502,946,955	1,005,893,910
합계	10.18%	3,397,931	2,000,000,000	4,000,000,000	

2) G는 2022. 11. 1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1,497,053,045원, 피고 C에게 502,946,955원을 각 지급하였다.

3) E는 2022. 11. 1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이하 '2022. 11. 14.자 공시'라 한다)하면서, "잔금 : 4,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잔금 지급일 : 거래종결 시, 거래종결일은 2022. 12. 27.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E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연기 및 피고들과 G 등의 해제통지

1) E는 이사 선임의 건 등으로 2022. 12. 27.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는 2023. 1. 11., 2023. 1. 30.로 재차 연기되었고, 다시 2023. 2. 17.로 연기되었다.

2) 피고들은 2023. 2. 13. G 등에 'G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잔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이하 '피고들의 2023. 2. 13.자 해제통지'라 한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G 등에 도달하였으며, E는 같은 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이하 '2023. 2. 13.자 공시'라 한다)하였다.

2. 발신인 본인(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2022년 11월 14.일 수신인(G 등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3. 수신인은 "본 계약" 제3조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방법] 3.항 "잔금 금 사십억 원을 임시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별첨2] 매도인별 계좌 내역표 상의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 후 질권설정하는 방식으로 예치(에스크로)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1) 1차 위반 - 2022년 12월 27.일 임시주주총회 3영업일 전

2) 2차 위반 - 2023년 01월 11.일 임시주주총회 3영업일 전

3) 3차 위반 - 2023년 01월 30.일 임시주주총회 3영업일 전

4.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아 발신인은 수신인의 요청에 의하여 1차, 2차 임시주주총회를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연기 하여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이 3차 위반을 하였을 때 발신인은 잔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권이 수신인에게 양도되는 모양이라 발신인은 위급함을 인지하고 2023년 02월 17.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였습니다.

5. 수신인께서는 "본 계약" 제3조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방법] 3.항을 3회 위반하였고, 제10조[매수인의 의무] 2.항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6. "본 계약" 제11조 [계약해제] 2.항 ①조 "본 계약에 따른 잔금을 에스프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해지 및 해제를 통보합니다.

3) G의 대표이사 I은 2023. 2. 15. F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G는 2023. 2. 16. 피고들에게 "G는 수신인들과 2022. 11. 14. 체결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합니다. 귀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이하 'G의 2023. 2. 15.자 해제통지'라 한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4) G 등은 2023. 10. 8. 피고들에게 위 1.의 다. 3)항과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이하 'G 등의 2023. 10. 8.자 해제통지'라 한다), 위 각 내용증명은 2023. 10. 11.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와 G 등의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G는 2023. 2. 16. 원고가 G로부터 G가 E에 대하여 취득한 계약금,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채권(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2023. 2. 16.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는 2023. 2. 16.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와 G, H은 2023. 10. 10. 위 1.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H를 채권양도인으로

추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2023. 10. 10.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2023. 2. 16.자 채권양도계약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 등은 2023. 10.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23. 10. 19.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서(갑 제9, 12, 13호증)에는 채권양도의 대가, 원인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가 G와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피고들이 지적하자 원고는 H의 이름을 추가하여 동일한 내용의 2023. 10. 10.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소송신탁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915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가 2022. 11. 14. G 법인 계좌로 2,000,000,000원을 입금한 점, 원고와 G, G의 대표이사 I, J, K(이하 G 내지 K를 통틀어서 'I 등'이라 한다)는 2022. 12. 27. 원고를 채권자, I 등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2022. 11. 14. I 등에게 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I 등은 위

2,000,000,000원을 2023. 1. 3.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2023. 2. 13. G 등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G 등은 2023. 2. 15. 또는 2023. 10. 8. 피고들에게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G와 H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위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수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946,168,958원(= 원상회복청구권 1,497,053,045원 + 손해배상금 449,115,913원(= 이 사건 양수도계약 매매대금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4,491,159,135원 × 10%,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는 653,831,041원(= 원상회복청구권 502,946,955원 + 손해배상금 150,884,086원(= 이 사건 양수도계약 매매대금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1,508,840,865원 × 10%))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G와 H은 약정 기한 내에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G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의사표시가 G 등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들의 귀책으로 위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은 G와 H의 불가분채권임에도 2023. 2. 15.경에는 G만이 E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통지를 하였는바, 2023. 2. 15.경 해제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이행거절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들의 2023. 2. 13.자 해제통지가 그 무렵 G 등에게 도달하였고, E는 2023. 2. 13. 위 해제통지와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는바, 위 해제통지 및 공시는 문언 그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2. 13.에는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G 등이 2023. 2. 13.에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귀책이 없으므로, 2023. 2. 13.자 해제통지는 피고들에게 귀책이 있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2023. 2. 13.에는 이미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고, G 등이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양수도계약은 G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피고들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2023. 2. 13.자 해제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또는 위 해제통지로 위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9, 21, 22, 25, 2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2023. 2. 13.자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는 피고들의 귀책이 있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3항은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한을 "임시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이라고 정한 점, 위 양수도계약서에는 위 임시주주총회가 언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인지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점, 2022. 11. 14.자 공시에도 이 사건 잔금 지급기한을 "거래종결시, 거래종결일은 2022. 12. 27.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과 G 등은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한을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일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G 등과 F은 2022. 11. 1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수도계약과 별개로 G 등이 F에게 7,0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F이 E에 부담하는 6,000,000,000원의 채무를 G 등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23. 1. 19.경 G 측을 대리하던 L에게 "추가로 (2023년 1월) 27일에 나한테 줄 60억도 에스프로 해야 (E의) 임총(임시주주총회를 의미한다)을 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고 그동안 착실히 이행해줬던 우리 회사(E를 의미한다)와 나의 자존심이고, 3달 가까이 늦어져 바닥까지 실추된 외부의 스트레스를 참고, 참고했던 보상이라 보면 되겠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G 측이 2023. 2.경 작성하여 F 측에게 보낸 이 사건 양수도계약 부속합의서(갑 제26호증)에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대위변제약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 측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주도한 F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대위변제약정의 이행을 위 양수도계약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E의 임시주주총회는 2022. 12. 27.로 예정되었다가, 2023. 1. 11.과 2023. 1. 30.로 재차 연기되었으며, 그 이후 다시 2023. 2. 17.로 연기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2023. 1. 30.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연기된 이후인 2023. 2. 8. E의 전무 M은 G 측에서 피고들에게 보낸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갑 제26호증)를 검토한 후 G 측에게 "M입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재검토하여 회신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 무렵까지도 피고들과 G 등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2022. 11. 14.자 공시에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을 "2022. 12. 27. 또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로 기재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을 "2023. 1. 30. 또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로 변경하여 공시하였던 점 등을 위 ①항에 더하면, 피고들과 G 등은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한을 새로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2023. 2. 17.의 3영업일 전인 2023. 2. 13. 24:00까지로 새롭게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가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한 것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공시를

변경함으로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지,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한을 연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G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관하여 공시하는 것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사안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E는 2023. 2. 13.자 공시에서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음을 공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E가 벌점을 부과받았다는 자료도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한 것이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한을 연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11조는 계약해제라는 제목 아래에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개정, 해제 및 취소는 매도인들 및 매수인들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행의 최고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14조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G 등이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하는바, 피고들이 G 등에게 위와 같은 최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2023. 2. 13.자 해제통지는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

⑤ E는 2023. 3. 15.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7,000,000,000원으로 하여 N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피고들이 G 등과 2022. 11. 1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2. 13.경 이전까지는 위 양수도계약 이행을 협의하였는바, 위 양수도계약 체결의 경위, 이행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다른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종국적으로 위 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로 피고들의 2023. 2. 13.자 해제통지를 하였다고 보인다.

⑥ 피고들은 『G 등의 대리인인 J은 2023. 1. 6.경 '2023. 1. 11. 또는 2023. 1. 13.에 이 사건 잔금 중 1,0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2023. 1. 27.경 에스크로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G 등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도 G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은 2023. 2. 7.경 G 측에게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G 등의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나, 피고들의 추가 요구를 G

등이 수용하면 주식 및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2023. 2. 13.자 해제통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약서는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J이 G 등의 대리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 일부 문장을 삭선으로 지우고, 단어를 추가한 점 등 그 문언이나 형식이 처분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2023. 2. 7.경 E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메모(을 제4호증)는 문서 명의자,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음 기재한 것에 상당 부분이 수정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F이 2023. 2. 7.경 G 측에게 위 양수도계약 해제통보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해제의 시기에 관한 판단 원고는 G 등이 2023. 2. 15. 및 2023. 10. 8.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공동양수인인 G와 H이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려면 피고들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와 H이 모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취지 참조),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2023. 2. 15.경 H이 피고들에게 위 양수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G의 2023. 2. 15.자 해제통지는 위 양수도계약의 당사자 중 H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H은 2023. 10. 8. G와 함께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3. 10. 11.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수도계약은 2023. 10. 11.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으므로 위 양수도계약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취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은 2022. 11. 1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1,497,053,045원, 피고 C에게 502,946,955원을 각 지급한 사실, G는 2023. 2. 16. 및 2023. 10. 10.에, H은 2023. 10. 10.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G는 2023. 2. 16. 및 2023. 10. 17.에, H은 2023. 10. 17.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한 양수금으로, 피고 B는 1,497,053,045원, 피고 C는 502,946,9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된 사실, 위 양수도계약서 제13조 제1항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각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양수도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G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G 등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한 양수금으로 피고 B는 1,497,053,045원, 피고 C는 502,946,9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G 등이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3.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2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김동현

판사김민지